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추계, 통계 업무 및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업무를 위한 자료수집·분석 등을 위탁할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자함.

한편,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조정신청 주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정절차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현행 법령의 조문 번호를 정비하는 등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령의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

더불어, 협의 완료 시 협의 요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한 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현행 협의 절차를 명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업무를 위한 자료수집·분석 업무 위탁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법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협의·조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규정

나. 사회보장 재정추계·통계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분석 등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규정

다. 협의완료 시 경과 통보 절차 규정(안 제16조제1항 개정)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 시, 그 결과를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 ~ 6.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법 제2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각각 “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민간위탁 기관) 법 제26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18조의2(민간위탁 기관) 법 제32조의2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u>경우에</u> 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 ----- ----- <u>경우에</u> <u>는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u> <u>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 <u>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한 후</u> -----.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	<u><삭 제></u>
③ 위원회는 <u>제2항에 따른 조정</u>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u>법 제26조제4항</u> ----- ----- -----.
④ 위원회는 <u>법 제26조제3항에</u>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④ ----- <u>법 제26조제4항</u> ----- ----- -----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⑤ ----- 법 제26조 제4항-----

-----.

제16조의2(민간위탁 기관) 법 제26조 제3항제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18조의2(민간위탁 기관) 법 제32조의2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u>다른 학교</u> <u>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u> <u>적용을 받는 연구기관</u> <u>3. 국공립 연구기관</u> <u>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u> <u>정하는 기관</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연 락 처	(02) 6020 - 3317